

*도시가스 사용계약(신청)서 약관

도시가스사용자(이하 “가스사용자”라 함)와 (주)귀뚜라미에너지(이하 “회사”라 함)는 가스 관련 법규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 및 요금 납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.

제1조(목적)

본 계약은 가스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쌍방 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할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제2조(준수사항)

①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1. 가스요금 및 그 밖에 공급규정에서 정한 제 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
2.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
3.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, 임대, 상속, 경매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서면 또는 기타방법으로 회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.

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는 독촉장을 발부하고,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%의 연체료를 연간 2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합니다.

③ 가스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임의로 조작, 파손, 무단교체하거나 봉인 파손,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사용 등의 부당행위를 할 경우 가스사용자는 공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납부 등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집니다.

제3조(요금의 납기와 수납 방법)

회사는 매월 또는 각 고지분을 소정 납기 내까지 징수합니다. 다만, 공급중지, 폐지, 부도, 회생 절차 또는 연 2회 이상의 습관적으로 미납된 수요가는 월 3회 이내에 분할 검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, 다만 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(공급중지)

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
1.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 징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2.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검침·점검·계량기교체 작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
3.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한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
4. 계약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때
5. 가스사용자의 토지 내에 있는 회사 소유의 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 또는 망실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
6. 가스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재가 불분명할 때
7.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
8. 그 밖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회사의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

- ② 제1항에 의한 정상적인 공급중지(계량기 전단밸브 차단)가 불가능하고 가스사용자에게 절차 및 제반 비용이 사전통지된 경우 회사는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행위(배관절단 등)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비용은 통지내용에 따라 처리한다.
- ③ 가스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급중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하되, 만기 시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(기타)

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, 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,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 및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릅니다. 또한, 본 계약 내용과 관련된 법률, 관련 규정 등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률 및 해당 규정을 따릅니다.